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11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신영대·최기상·정태호

정성호 · 김용만 · 강준현

박홍배 • 천준호 • 염태영

정을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면서 전통시장사용분이나 대중교통이용분 등에 대하여는 다른 사용처에 지급된 금액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소비 감소가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효과적이라고 평가받는 지역화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 군산의 경우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 냈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높이 평가받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방정부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사용분에

대해 10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 한도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로, "제1호·제2호" 를 "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하"를 각각 "제3호의2에 따른 지역화폐사용분 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등사 용분"을 "대중교통이용분·도서등이용분 및 지역화폐사용분"으로. "전 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을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및 지역화폐사용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대중교통이용분"을 "대중교통이용분, 지역화폐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다목1)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 + 지역화폐사용분 × 100분의 100"으로.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 용분"을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 서등사용분 - 지역화폐사용분"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100분의 30" 을 "100분의 30 + 지역화폐사용분 × 100분의 100"으로.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을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 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지역화폐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항제7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3의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항 에서 "지역화폐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 과 같음) 략)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2)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2, 제4호 및 제5호----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제2호 • 제3호의2-----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 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 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 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u>제3호의2에 따른 지</u>
	역화폐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은 제외한다. 이하
2	
Δ.	
	<u>제3호의2에 따른 지</u>
	역화폐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은 제외한다. 이하

경우에는 100분의 80			
	거어제나	100 번 6	$O(\Lambda)$
	タチ에ー	100분의	\times (1)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이 항에서 "도서등사용 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 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

가.·나. (생 략) <u><신 설></u>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
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
분 및 도서등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

3
-제3호의2에 따른 지역화폐사
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
다. 이하
가.・나. (현행과 같음)
3의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사
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지역화
폐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
의 100
4
.
N
대중교통이용 대중교통이용
분·도서등이용분 및 지역화
폐사용분

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u>전통시장</u> 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 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 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 0

-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 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 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 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도서등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 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3년 1월 1일부 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 나. (생 략)

	<u>전통시장사용분·대중</u>
	교통이용분 및 지역화폐사용
	분
5.	
	<u>대중</u>
	교통이용분, 지역화폐사용분-
6.	
	<u>.</u>
	가.•나. (현행과 같음)

-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 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 액
 -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 등사용분 + 도서등사용 분) × 100분의 30 + (최 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직불카드등사 용분 - 도서등사용분) × 100분의 40
 -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 분 × 100분의 15 + 직불 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 카드등사용분) × 100분 의 40

다
1)
<u>100</u> 분의 <u>30 + 지</u>
역화폐사용분 × 100분의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
카드등사용분 - 도서등
사용분 - 지역화폐사용
브
2)
100분
<u>의 30 + 지역화폐사용분</u> × 100분이 100 - 1기
× 100분의 100최저
사용금액 - 신용카드사
용분 - 직불카드등사용

7.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
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
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③ ~ ⑩ (생 략)

<u>문 - 지역화폐사용문</u>
7.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u>12월 31일</u>
<u>202</u>
<u>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u>
<u> 31일</u>
③ ~ ⑩ (현행과 같음)